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5년 1월 6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5년 1월 1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1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05. 1. 17) 상정
- 제11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05. 1. 17)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최 중 화)

가. 제안이유

- 7~10인승 자동차에 대하여 2000년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2001~2004년까지 4년간은 적용을 유예한 후 2005년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자동차세를 인상·납부토록 하였으나,
- 2005년부터 급격하게 인상되는 자동차세에 대한 민원 반발 및 납세자의 불만을 해소하도록 하는 표준안이 시달(2004. 12. 27. 경기도)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7~10인승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 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하되, 그레이스 등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안 제15조2 신설)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input type="radio"/> 다른 시, 군에도 감면 등 조항을 신설하는지?	<input type="radio"/> 경기도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다른 시, 군에도 신설할 것임.
<input type="radio"/> 봉고차 등의 연간 자동차세액은 얼마나 되는지?	<input type="radio"/> 연간 65,000원임.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없 음

나. 반대토론

없 음

5. 심사결과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38호
의결 년월일	2005.1.18 (제117회)

제출년월일 : 2005. 1. 6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7~10인승 자동차에 대하여 2000년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2001~2004년까지 4년간은 적용을 유예한 후 2005년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자동차세를 인상·납부토록 하였으나,
- 2005년부터 급격하게 인상되는 자동차세에 대한 민원 반발 및 납세자의 불만을 해소하도록 하는 표준안이 시달(2004. 12. 27. 경기도)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7~10인승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하되, 그레이스 등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안 제15조2 신설)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 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15조의2(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세율을 적용하여 부과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